※ 구)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 2023 공연장 연계 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 공고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 구)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 2023 공연장 연계 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 공고

공연장 연계 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핵심목적은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업으로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연 및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장 가동률을 증대하여 공연장의 운영목적을 달성하며 공동성장 하는 것입니다.

## 1 공고개요

○ 공 고 명: 2023년도 공연장 연계 예술단체 육성지원 공모

○ 공고기간: 공고일 ~ 2. 21.(화)

○ 사업내용

1)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업을 통한 공동성장 지원
2) 비평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한 환류 및 역량강화
3) 국내·외 협력프로그램을 통한 공연예술시장 진출 지원

○ 지원내용

- 예술단체의 사업비(신작, 레퍼토리공연, 퍼블릭프로그램) 및 운영비 지원
- 공연장의 필요경비(프로그램 운영, 작품제작,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지원단체: <u>예산범위 내 (총 8개 내외 선정 예정)</u>

○ 지원규모 및 기간: 최소 5천만원 ~ 최고 1억원 (단년도/다년도(최대3년))

○ 추진일정(안)

| 공모 | 1차 | 2차 | 지원금 교부 | 사업 진행 | 평가 |
|---|---|---|---|---|---|
| 공고일~ 2. 21(화) | 2월 하순~3월 초 | | 3월 초 | 3월~12월 | |
| 공모 진행 | 서류 심의 | 공연장 현장실사 + PT·인터뷰 심의 | 교부 신청 | 사업 진행 | 비평/평가 컨설팅/ 최종평가 |

## 2 변경 및 주요사항

| 구 분 | 2022년 | 2023년 |
|---|---|---|
| **사업명**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br>(공연장-예술단체육성지원) | - 공연장 연계 예술단체 육성지원 |
| **신청 및 선정건수** | - 1개 공연장과 1개 예술단체가 매칭하여 지원신청<br> | - 1개 공연장은 최대 2개 예술단체를 매칭하여 **지원신청** 가능<br> <br>**※ 지원신청 주체는 예술단체**<br>**※ 선정은 최대 1개 단체** |
| **평가점수 환류** | - 공연 및 결과 평가 시행 | - 평가 점수 환류 적용 |
| **국내·외 교류프로그램** | -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br>(아비뇽 알 극장 네트워크) | - (가칭) 부산퍼포밍아트마켓 진행<br>- 국내 교류프로그램 진행<br>- 아비뇽 극장과 일부 프로그램 진행 등 |
| **※ 비평 프로그램** | - 필수참여<br>- 비평집 발간 | - 필수참여 유지 |

# 3 세부 공모내용

## ❑ 지원신청자격(대상)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예술단체</th><th>공연장</th></tr>
<tr><td>공모신청<br>주체</td><td colspan="2">O<br>※ 반드시 예술단체가 지원신청<br>해주셔야 합니다.</td><td>X</td></tr>
<tr><td>지원조건</td><td colspan="2">- 최근 5년간(2018~2022) 3회 이상<br>부산에서의 공연실적이 있는 예술단체<br>-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단체<br>소재지가 부산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br><table><tr><th>분야</th><th>지원 대상 단체</th></tr><tr><td>연극</td><td>연극분야(아동·청소년극,<br>뮤지컬 포함) 전문극단</td></tr><tr><td>무용</td><td>한국무용, 현대무용, 스트릿댄스,<br>발레 등 전문 무용단</td></tr><tr><td>음악</td><td>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br>중창단, 오페라단 등<br>창작・연주 전문단체</td></tr><tr><td>전통<br>예술</td><td>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br>예술창작·공연전문단체 등</td></tr></table></td><td>- 공고일 전 부산을 소재지로 두고<br>있는 모든 공연장<br>- 공연장 등록을 마치고, 공연장등록증을<br>소지하고 있는 공연장<br><br>※ 미등록 공연장일 경우에도 신청은<br>가능하나, 향후 공연장 등록에 대한<br>계획 및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br>[서식1-<4-5>]</td></tr>
<tr><td rowspan="3">공통사항</td><td>핵심<br>목적</td><td colspan="2">공연장 연계 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핵심 목적은<br><u>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업으로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br>마련하고, 다양한 공연 및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장 가동률을<br>증대하여 공연장의 운영목적을 달성하며 공동성장</u> 하는 것입니다.<br>이에, 사업 취지에 맞게 예술단체와 공연장의<br>유연한 협업과 지원이 가능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td></tr>
<tr><td>협약<br>체결</td><td colspan="2">공연장과 예술단체 매칭 및 협약 체결</td></tr>
<tr><td>신청 및<br>선정건수</td><td colspan="2">1개 공연장은 최대 2개 예술단체를 매칭하여 지원신청 가능<br>→ 선정은 최대 1개 단체</td></tr>
</table>

## ❑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단년도 지원: 최소 5천만원 ~ 최대1억원
- 다년도 지원: 3년간 최대 3억원 (연간 최대 1억원 지원)

※ 다년도 지원사업 선정단체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성과평과를 통한 지원금 결정

### ○ 지원예산 및 편성

<table>
<tr><th rowspan="2">항 목</th><th rowspan="2">내용</th><th colspan="2">편성비율(금액)</th></tr>
<tr><th>공공공연장</th><th>민간공연장</th></tr>
<tr><td>예술단체<br>사업비</td><td>- 예술단체의 프로그램 (창작초연공연, 레퍼토리공연, 퍼블릭 프로그램, 역량강화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경비<br>ex) 제작비, 재료비, 출연료, 사례비, 임차비, 홍보비 등</td><td>50~100%<br>(필수편성)</td><td>50~100%<br>(필수편성)</td></tr>
<tr><td rowspan="2">예술단체<br>운영비</td><td>-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br>① 기획 및 행정인력(전담인력)의 인건비<br>② 예술단체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외의 경비<br>(사무용품 대여 및 소모품 구입 등)</td><td>0~40%<br>(선택편성)</td><td>0~30%<br>(선택편성)</td></tr>
<tr><td>- 사업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br>→ 회의비, 식비, 다과비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경비</td><td colspan="2">최대 200만원<br>편성가능</td></tr>
<tr><td>공연장<br>필요경비</td><td>-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연장이 필요로 하는 경비<br>→ 프로그램운영, 작품제작, 홍보/마케팅, 일용직인건비 등</td><td>0~10%<br>(선택편성)</td><td>0~20%<br>(선택편성)</td></tr>
<tr><td colspan="4">※ 편성 및 집행 불가 항목<br>◆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br>◆ 단체 대표자의 급여성 인건비, 당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과 무관한 직원의 급여성 인건비 및 단체 운영경비<br>◆ 당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과 무관한 단순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br>◆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br>*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협업 예술단체에게 제공하는 공연장 및 연습실 사용료 등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td></tr>
</table>

## ❑ 협약조건(지원조건)

| 공연장 역할 | 예술단체 역할 |
|---|---|
| **재단이 제시한 협약서를 준용하여<br>공연장과 예술단체는 직접 협약체결을 하고<br>공모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
| ① 협약 예술단체에 창작 및 사무공간, 연습공간 등 무상제공<br>- 연습실: 공연장 혹은 연습이 가능한 공간에서 예술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br>※ 연습실이 없을 경우, 공연장을 연습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별도 계획 제출<br>- 사무공간: 사무를 위한 공간 및 사무용품 제공<br>- 기타공간: 예술단체와 협약을 통한 기타 편의시설 제공 및 별도 계획 마련 | ① 우수작품 창작(신작 및 우수레퍼토리) 및 개발 노력<br>- 공연장과 협약을 통해 동반 성장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자유롭게 구성<br>1) 신작 공연<br>2) 우수레퍼토리 공연<br>3) 퍼블릭(체험, 교육 등)프로그램 운영<br>4) 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br>5) 타분야, 타지역 예술단체 교류 공연 등 |
| ② 협약 예술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 | ② 사업추진 시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 (작품 기획·제작, 프로그램 운영 등) |
| ③ 협약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업<br>※ 전담기획인력 확보 등 | ③ 퍼블릭 프로그램 (교육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개발 노력 |
| ④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 ④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
| ⑤ 예술단체와 적극 협업을 통한 성과제고 | ⑤ 공연장과 적극 협업을 통한 성과 제고 |
| ⑥ 보조금 정산 시 세부내역 정산 협조 | ⑥ 보조금 정산 총괄 |
| ⑦ 부산문화재단 비평 및 평가,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및 요청자료 협조 | ⑦ 부산문화재단 비평 및 평가,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및 요청자료 협조 |
| ⑧ (가칭)부산퍼포밍아트마켓 추진 시 협조 | ⑧ (가칭)부산퍼포밍아트마켓 추진 시 협조 |
| **※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사정상 해당 협약조건(지원조건)의 제공이나 실행이 어려울 경우, 사업의 목적에 맞게 협업방안을 보완·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 |

## ❑ 지원신청 제한사항

### ○ 신청불가능한 예술단체

①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② 정부·지자체 및 산하 국립·공립 출자·출연기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포함)으로부터 국고·지방비(방송발전기금 포함)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③ 언론사·학교·학원·종교·친교기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

④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단체

⑤ 보조금 위반행위를 한 단체(관련 법령·규정의 위반행위 처리 기준에 따름) 혹은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단체

⑥ 부산문화재단 내 해당 공모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불이익 적용을 받았을 경우

-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서 최종제출기한을 초과하였거나 완료되지 않은 단체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수행한 단체

⑦ 2023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우수예술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교부금을 지원받은 단체

⑧ 공공  공연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

⑨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연계 예술단체 육성지원 (구)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수혜기간이 총 6년을 초과한 우수단체

⑩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혹은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⑪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협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 혹은 부산 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및 재단에서 구성한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⑫「예술인복지법」제6조 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되어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나 개인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단체

**○ 신청불가능한 사업**

① 당해년도에 **동일사업**으로 국고・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단, 타기관의 중복수혜 가능사업에 대하여 부산문화재단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②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③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④ 보조금 수령자의 사업비 단순 재교부 사업

⑤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⑥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사업

※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신청하여 중복 지원결정이 되는 경우 택일하여야 함

※ 선정결과 발표 이후라도 '신청불가능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취소 및 환수 조치

## ❑ 심의배제사항

○ 지원신청자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 지원신청 제한사항(단체,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

## ❑ 지원신청방법

○ 공모기간: 공고일 ~ **2월 21일(화)**

○ 지원신청기간: 2023년 **2월 10일(금) ~ 2월 21일(화) 17:59** 마감

○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www.ncas.or.kr)를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 신청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 오류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능한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신청 시 시스템상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1577-8751)으로 문의.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월~금(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이며 해당시간 외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사업 세부일정 (예정)

| 지원사업 공모 | → | 공연장-예술단체 협약체결 및 지원신청서 작성 | → | 지원신청 | → | 서류심의 | → |
|---|---|---|---|---|---|---|---|
| 공고일~2. 21.(화) | | 공고일~2. 21.(화) | | 2. 10.(금)~ 2. 21.(화) | | 2월 셋째 주 | |

| 공연장 현장실사 | + | PT·인터뷰 심의 | → | 최종 결과발표 | → | 지원금교부 및 사업수행 (평가/컨설팅) |
|---|---|---|---|---|---|---|
| 2월 넷째 주~3월 초 | | 2월 넷째 주~ 3월 초 | | 3월 중순 | | 3월~12월 |

※ 심의일정 및 방법은 지원단체 수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연장 현장실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심의로 진행되며,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 ❑ 다중신청 및 선정 관련 (재단사업)

○ (1개)공연장은 최대 (2개)예술단체와 협약하여 신청 가능

※ 지원신청 주체는 예술단체임

○ 2023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에 다중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되었을 경우는 택1 해야 함

| 번호 | 구분 | 지원사업명 | 공모기간 | 지원규모 | | 비고 |
|---|---|---|---|---|---|---|
| 1 | 창작활동지원 | 창작준비지원 | 미정 | 정액 300만원 | | |
| | | 우수예술지원 | 22.11.14~12.13 | 음악 | 최대 3,500만원 | |
| | | | | 연극 | | |
| | | | | 무용 | | |
| | | | | 오페라 | 3,000만원~1억원 | |
| | | | | 전통·국악 | 500~3,500만원 | |
| 2 | 예술가치 확산지원 | 공공예술 | 2월 예정 | 사업예산 내 지원 | | |
| | | 다원예술 | 2월 예정 | 최대 3,000만원 | | |
| 3 | 주제특화 예술지원 | 국제예술교류 | 2월 예정 | 사업예산 내 지원 | | |
| | | 레지던시 활성화 | 3월 예정 | 500~4,000만원 | | |
| | | 올해의 포커스온(예정) | 미정 | 1차년도: 정액 2,000만원<br>2차년도: 최대 8,000만원 | | |

## ❑ 심의세부절차

| 분 류 | 심의방식 | 심의내용 | | 비고 |
|---|---|---|---|---|
| 1차심의 | 서류심의 | · 필수자료 제출여부 확인 및 행정심의<br>· 공모신청서 서류 심의 (공연장/예술단체) | 100점 | 공연장(40)<br>예술단체(60) |

↓

**※ 1차 심의 평균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경우 2차 심의대상**

(심의위원이 7명 이상일 경우, 최고·최소 점수를 제외한 합계 평균)

| | | | | |
|---|---|---|---|---|
| 2차심의 | PT·인터뷰심의 | · 공연장-예술단체 PT·인터뷰 심의<br>· 공연장 현장 실사<br>- 공연장과 예술단체가 제시한 협업사항을 구현할 수 있는지 공연장 컨디션 및 부대시설 확인 및 질의응답 | 100점 | |

**※ 2차 심의점수는 1차 심의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100점(만점)으로 진행**

## ❑ 심의기준

### ○ 1차 서류심의기준 (100점)

| 공연장 (40점) | | | 예술단체 (60점) | | |
|---|---|---|---|---|---|
| 심의기준 | 심의 점수 | 심의지표 | 심의기준 | 심의 점수 | 심의지표 |
| 공연장 운영목적과 성과 | 15 | - 공연장 운영목적 및 달성 여부<br>- 기획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실적<br>- 과거 활동을 토대로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예술단체의 활동실적 및 성과 | 10 | - 예술단체의 활동 실적 및 성과<br>- 과거 활동을 토대로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 예술단체와의 협업계획 실현가능성 | 10 | - 예술단체의 수행계획에 맞는 협업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br>- 공연장 및 공간 무료제공 여부<br>- 기타 협업 및 예산지원 등 노력 정도 등 | 공연장과의 협업의지 및 실현가능성 | 15 | - 공연장과 협약 체결 여부<br>- 공연장의 운영목표에 맞는 협업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br>- 기타 공연장과의 협업의지 및 노력정도 등 |
| | | | 예술단체의 조직역량 | 10 | - 예술단체 구성원·협업 인력의 현황 및 전문성<br>- 예술단체의 조직운영 및 경영상태 등 |
| 시설 및 운영역량 | 15 | - 시설 및 운영현황 (객석규모, 부대시설, 가동률 등)<br>- 공연장 안전계획<br>- 공연장 인력 현황 및 역량 등 |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예술성 및 충실성 | 25 | - 프로그램의 예술성 및 충실성<br>- 파급효과 및 기여도<br>- 예산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합리성<br>- 공연장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여부<br>- 단체(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 계획(3년)의 충실성 |

### ○ 2차 심의기준 (100점)

| PT 및 인터뷰심의 (100점) | | | | | |
|---|---|---|---|---|---|
| 심의기준 | 심의 점수 | 심의지표 | 심의기준 | 심의 점수 | 심의지표 |
| 협업 가능한 공연장 시설 및 인력현황 | 15 | - 협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현황 (객석규모, 부대시설, 가동률 등)<br>- 공연장 인력현황 |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예술성 및 충실성 | 30 | - 프로그램의 예술성 및 충실성<br>- 파급효과 및 기여도<br>- 예산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합리성<br>- 공연장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여부<br>- 단체(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 계획(3년)의 충실성 |
| 제안한 협업 프로그램 실현을 위한 공간의 컨디션 | 15 | - 예술단체와 공연장의 협업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의 유무 및 컨디션 |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업계획 및 실현가능성 | 20 | - 공연장과 예술단체 구성원의 역량 및 전문성<br>-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 |
| 등록공연장 유무 및 의지 | (최대) +3 | - 등록공연장 유무 확인<br>- 미등록 공연장일 경우, 등록공연장 가능성 및 의지 | 파급효과 및 기여도 | 20 | - 사업을 통한 해당분야 및 공연장 운영의 파급효과 및 예상되는 기여도 등 |

## ❑ 제출서류

○ [서식1] 공연장 연계 예술단체 육성지원 신청서 1부.

○ [서식2] 협약서 1부.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 유의사항

○ 공모일정 및 심의일정은 신청단체수와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일정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심의결과에 따라 다년도/단년도 지원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 신청서 양식은 기본적으로 다년도(3년)지원 양식입니다. 단체와 공연장의 계획에 따라 양식을 일부 수정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1차 심의 이후 2차 심의 대상자는 심의 전까지 PT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선정된 단체(공연장)는 재단에서 추진하는 비평 및 컨설팅 프로그램과 역량강화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선정된 단체는 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가칭)부산퍼포밍아트마켓에 협조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 수행 시 요건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제도임

## ❑ 문의처: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51)745-7232, 234